

##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의안번호	143
------	-----

제출년월일 1998. 3. 6

제출자 서초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화훼산업을 우리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민선시대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 출연금
- . 기타 수입금

####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 화훼농가 육성을 위한 영농자금, 시설투자자금 등

#### 다. 기금의 사용등 (안 제8조)

- . 읍자대상 : 서초구에 거주하는 화훼농가, 영농법인, 화훼유통 판매자
- . 읍자액 : 1 가구당 3천만원 이내, 단 법인은 1억원 이내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에 편성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설치)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용도) 기금은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융자
2. 화훼재배 시설투자자금 융자
3. 화훼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융자
4. 기타 이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화훼산업육성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과 지역농협, 농촌지도소의 직원 및 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등
4. 기타 화훼산업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의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에는 담당과장이 서기에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주소 및 사업장이 서초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화훼산업

에 종사하는자 또는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업종이 국내생산품 화훼유통판매에 종사하는자
3. 기타 화훼산업과 관련하여 지역농협 및 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은자 중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 ②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한다.
    1. 화훼생산 농가 : 3천만원 이내
    2. 화훼생산 및 농업법인 : 1억원 이내
    3. 화훼유통판매자 : 2천만원 이내
  - ③ 용자 및 지원방법, 상환절차, 대출금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1) 제9조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기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20&gt;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7條 (市·邑의 設置基準等)**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改正 95·8·4>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④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道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市·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평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合理화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다. 奉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라. 奉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 마. 소속公務員의 人事, 厚生福祉 및 教育
- 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
- 사. 豈算의 編成, 執行 및 會計監查와 財產管理
- 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
- 자. 公有財產管理
- 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
- 카. 地方自治團體가 承認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制定

##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 운영 및 管理
- 다. 生活困窮者の 보호 및 지원
- 라. 老人, 兒童, 心身障礙者, 青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
-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 운영
-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預防과 防疫
- 사. 墓地, 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 管理
-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 자. 清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

## 3. 農林·商工業等 產業振興에 관한 事務

- 가. 小溜池, 洪渠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나. 農林·畜·水產物의 生產 및 流通支援
- 다. 農業資材의 管理
- 라. 複合營農의 設置, 指導
- 마. 農外所得事業의 設置, 指導
- 바. 農家副業의 奨勵
- 사. 公有林管理
- 아. 小規模畜產開發과 酪農振興事業
- 자. 家畜傳染病 預防
- 차. 地域產業의 육성, 鼓勵
- 카. 消費者保護 및 購物의 奨勵
- 타. 中小企業의 육성
- 파. 地域特化產業의 開發과 육성, 지원
- 하. 優秀土產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

##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 管理에 관한 事務

- 가. 地域開發事業
- 나. 地方 木本, 建設事業의 施行

(총 62)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支出할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委任하는 때에는 이를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 第4節 財產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達成을 위하여 또는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產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產”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產의 價值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產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產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地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 第5節 補 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 第8章 地方自治團體 住民간의 관계

(총 46)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性質・地域特殊性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參加者의 資格을 제한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争에 불이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第62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競争의 공정한 執行 또는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일정한 期間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資格을 제한받은 者는 그 資格制限期間에 있어서는 各級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모든 入札에의 參加資格이 제한된다.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資格의 제한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第63條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 地方自治團體를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 이 法 및 다른 法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國庫”는 “地方自治團體”로, “中央官署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財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본다. (改正 95.1.5)

## 第8章 現金과 有價證券

**第64條 (金庫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소관 現金과 그의 所有 또는 보관에 속하는 有價證券의 出納 및 보관 기타의 金庫業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金庫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庫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金庫를 變更할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市・道에 本이사는 内務部長官, 市・郡 및 自治區에 有어서는 市・道知事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第65條 (歲計現金의 轉用)** 地方自治團體의 會計에 있어서 歲計現金에 부속이 생긴 會計는 동일 會計年度에 한하여 다른 會計로부터 資金을 轉用할 수 있으며, 轉用한 資金은 그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轉用資金에 대하여는 利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第66條 (金庫에 대한 檢查)**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内務部長官은 金庫가 취급하는 地方自治團體 소관의 現金 및 有價證券의 出納・보관에 관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第67條 (金庫의賠償責任)** 金庫가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취급하는 現金 또는 有 (주 59)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を 變更 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效率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特別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效率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후 3月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총 56)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 責任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 <新設 94·12·22>

###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第111條 (出納員)** ①出納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소속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

②出納員은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보관하여야 한다.

③出納員은 收入金出納員·日常經費出納員·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 및 物品出納員등으로 나눈다. (改正 91·12·31)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徵收官·經理官·財產管理官·物品管理官·債權管理官·債務管理官·支出員 또는 出納員과 그 代理者·分任者등 (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委任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 또는 委任할 수 있다.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을 당해 所屬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會計關係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關係公務員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며, 會計에 관한 法令中 당해 事務의 处置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①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용중인 物品을 亡失하거나 폐손함으로써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出納員과 그 出納事務를 代理 또는 分任하는 者가 그 보관에 속하는 現金 또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폐손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の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履임할 수 없다.

(총 56)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施行령

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2.3.30, 93.9.23, 95.5.16)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 9 장 재 신

## 제 1 절 공유재산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선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②제 1항제 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차·전차·액자·화자·기동차등의 체로 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부정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임종재산은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추 61)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온실, 버섯재배사등 農業生 産에 필요한 施設中 大統領 수이 정하는 施設의 敷地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 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 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 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수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1조제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3.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漁村發 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的 要件에 모두 적합 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가. 合名會社·合資會社 또는 有限公司일 것 나 農業人이 出資한 出資額의 合計가 그 農業會社法人의 總出資額의 2분의 1을 초과 할 것 다.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社員(有限公司의 경우에는 執 事를 말한다)이 農業人일 것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 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 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 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개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증가축 10두, 소가 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 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 는 자	